



제 322회 남양주시의회(임시회)
제 2 차 도 시 교 통 위 원 회

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6. 9. .

**도 시 교 통 위 원 회
전 문 위 원**

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과

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31일 시장으로 제출되어 10월 7일자로
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「주차장법」 개정('25.12.02. 개정, '26.06.03. 시행)으로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위임근거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,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시 조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 비율 조항 삭제(안 제20조제2항)
 - 「주차장법」 개정사항 반영
- 나. 별표·별지 서식 내 조례 인용조항 현행화(별표1의2 및 6,7,8, 별지 제1호)

4. 참고사항

- 부서협의
 - 비용추계 : 비용추계서 불임
 -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 -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 -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
- 입법예고 결과
 - 예고기간 : 2026. 6. 4. ~ 6. 24.(20일)
 -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2025년 12월 2일 개정 시행(' 26.6.3.)된 「주차장법」 제19조의5 제2항 제3호 ‘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 주차장치의 비율’ 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인 제20조 제2항을 삭제하고 별표 제목의 근거 조문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.
- 최근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자주식 주차장에 비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규모를 30%이하로 제한 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합리적인 조치라 여겨집니다.

□ 주차장법

제2조(정의)
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주차장"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.

가. 노상주차장(路上駐車場):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(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. 이하 같다)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(一般)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

나. 노외주차장(路外駐車場):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

다. 부설주차장: 제19조에 따라 건축물, 골프연습장,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(附帶)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·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

2. "기계식주차장치"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.

3. "기계식주차장"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.

4. "도로"란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.

5. "자동차"란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.

6. "주차"란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.

7. "주차단위구획"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.

8. "주차구획"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.

9. "전용주차구획"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(輕型自動車)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.

10. "건축물"이란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.

11. "주차전용건축물"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.

12. "건축"이란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(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13. "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"이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.

[전문개정 2010.3.22]

제19조의5(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)

①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[개정 2013.3.23 제11690호(정부조직법), 2018.8.14] [[시행일 2018.10.25]]

②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 또는 자치구는 지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1.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
2.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
3. ~~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~~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조례개정 후, 예산의 증감이 발생하는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예산상 조치가 수반되지 않음
- 상위법을 반영하여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을 제한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예산상 조치가 수반되지 않음.

4. 작성자

교통국 주차관리과장 김병한